2019년도 제9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 . 회의 개요

o 일 자 : 2019. 6. 19.(수요일)

o 방 법 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
- 심의위원 : 전응준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임진모 위원

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•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1건(안건번호 제2019-51342호~51441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 중에는 2019년에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 즉 막돼먹은영애씨 시즌17(2019)을 비롯하여 8월의 신데렐라 나인(2019), 보이스시즌3(2019), 고담 시즌5(2019), 이 세계 콰르텟(2019), 이 소리에 모여(2019),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(2019) 등의 사안들로서,합법시장에미치는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원안대로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생각됩니다.
- B 위원 : 심의대상물은 영화, 방송물 등으로서, 저작권자로부터 동의 없이 무단복제된 것으로 생각되고,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이 없으며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켤코 작지 않다고 판단되므로, 시정권고가 타당하다.
- C 위원: 51342호부터 51441호까지 100호는 방송 애니메이션, 드라마, 예능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

2019년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7. 1.

분과위원장 전응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